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5708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5 메트라이프타워 19층 (Legal팀)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 ■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3.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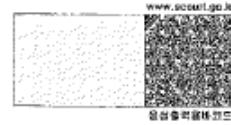


2015-0050885456-18F70

위법조항지움 확인되었습니다.

1 / 10

서울중앙지방법원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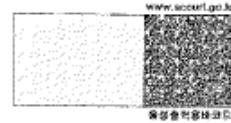
1. 기초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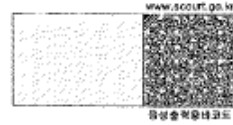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2.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추가하여 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의 보험금청구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묵시적 기망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그 재해사망보험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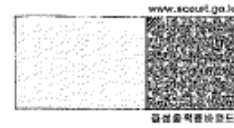
본소 및 반소 중 주위적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재해사망보험금의 발생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①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약관 제10조 제1호), ② 위 재해분류표상 '고의적 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정하고 있으며(약관 별표2), ③ 한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이 인정된다.

2) 위 약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특약의 보장개시일로 보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8. 2. 17.로부터 2년이 지난 2011. ■■■ 무렵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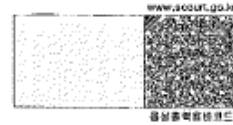
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앞서 본 가입금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보험금액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바, 이 사건 반소가 보험사고 발생일인 망인의 자살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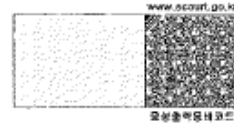
그러므로 보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 958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2011. 4. 7.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과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망인이 자살하였고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청구서상 청구사유 중 '일반란'을 체크하여 일반사망보험금에 한정된 청구로 처리하여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로서는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건 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에 반하여 원고는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시 그 대리인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임의로 일반사망보험금에 한정된 청구로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위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모든 보험금을 원고가 제대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고, 고액인 피고가 그와 같이 보험회사인 원고를 신뢰한 것을 피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⑥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일인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 다음날인 2011. 4. 13.(영업일이 아닌 2011. 4. 9. 토요일 및 2011. 4. 10. 일요일 제외)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1. 2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보험계약 대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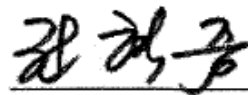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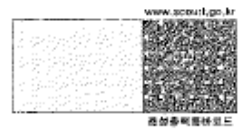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박영수 박 영 수 

판사 이누리 이 누리 

